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박순규 의원 대표발의)

#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509호
- 나. 제 안 자 : 박순규 의원(찬성자 18명)
- 다. 제안일자 : 2019년 3월 27일
- 라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9일

## 2. 제안이유

- 서울시 기구개편 사항과 사무위임에 대한 근거법령 개정 등을 적시에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직개편 시행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함.
  - 경제정책실 민생경제과의 “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” 사무(도시농업과로 변경)를 제외한 위임사무를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

관으로 변경함.

- 안전총괄실 보도환경개선과의 “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(도로의 점용관련)”를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로 변경함.

나. 사무위임의 근거법령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.

#### 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조직개편에 맞춰 부서명과 소관사무를 변경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## 나. 조직개편에 따른 실·본부·국 명칭 변경(안 별표)

-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(2019.1.1.) 사항을 반영해 부서 간 업무조정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있음.
- 먼저, 실·본부·국의 기능 개편을 통해 ▶ 경제진흥본부 → 경제정책실, ▶ 복지본부 → 복지정책실, ▶ 도시교통본부 → 도시교통실 ▶ 안전총괄본부 → 안전총괄실 ▶ 도시재생본부 → 도시재생실, ▶ 주택건축국 → 주택건축본부로 명칭이 변경된 바, 개정안은 조직개편에

맞춰 실·본부·국 명칭을 변경하였음.

○ 또한 조직개편으로 소관사무의 주무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 있음.

- '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'에서 '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'으로 주관 부서가 변경된 사무는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폐업 등의 명령·직권 말소 등의 위임사무 등 4건이며,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사무는 '도시농업과'로 변경되었음.

- 산업단지관리 사무는 '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'에서 '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'으로, 음반·음악영상물의 제작업·배급업에 관한 사무는 '문화융합경제과'에서 '경제정책과'로 주관부서를 조정하였음.

○ 이밖에 조직개편으로 주관부서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아래의 표와 같음.

〈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내용〉

주관부서명		해당 사무
현 행	변 경	
경제진흥본부 (민생경제과)	노동민생정책관 (공정경제담당관)	-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무 -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생활용품에 관한 사무 -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에 관한 사무 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사무
	경제정책실 (도시농업과)	-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

주관부서명		해당 사무
현행	변경	
경제진흥본부 (경제정책과)	경제정책실 (거점성장추진단)	-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
경제진흥본부 (문화융합경제과)	경제정책실 (경제정책과)	- 음반·음악영상물의 제작업·배급업에 관한 사무 등
안전총괄본부 (보도환경개선과)	도로교통실 (보행정책과)	- 도로의 점용허가 등의 사무 등
기후환경본부 (기후변화대응과)	기후환경본부 (대기정책과)	-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등
기후환경본부 (대기관리과)	기후환경본부 (대기정책과)	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관한 사무 등
	기후환경본부 (차량공해저감과)	- 자동차배출가스와 교통소음 진동의 규제에 관한 사무 등
안전총괄본부 (시설안전과)	안전총괄실 (건설혁신과)	-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 등
주택건축국 (임대주택과)	주택건축본부 (공공주택과)	- 택지개발 예정지구인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사무 등

#### 다.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(안 별표)

-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각종 위임사무에 인용되고 있는 인용조문의 변경과 용어 변경,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있음.
- 즉,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과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,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였음.

**<관계법령 개정 반영에 따른 조문 대비표>**

**(현행)**

**(개정안)**
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
민생 경제과	1. <u>계량에 관한 법률</u> 에 따른 다음의 사무			공정 경제 담당관	1. 「 <u>계량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다음의 사무		
	가. 폐업 등의 명령·직권 말소 등	○ 「 <u>계량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2조제4항, 제5항	(생략)		가. 폐업 등의 명령·직권 말소 등	○ 「 <u>계량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2조제5항, 제6항	(현행과 같음)
	나.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	(생략)		나. 정기 검사증인 표시	(현행과 같음)		
	다. 부정 계량기의 처리	(생략)		다. 부정계량기의 처리	(현행과 같음)		
	라. ~사. (생략)			라. ~사. (현행과 같음)			
	2. 「 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 」에 관한 다음의 사무		(생략)	2. <u>생활용품 안전관리</u> 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(현행과 같음)
	가. 공산품의 개선, 수거, 파기명령 등	○ 「 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 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		가. 생활용품의 개선, 수거, 파기명령 등	○ 「 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 」 제4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		
	나.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	○ 「 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 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		나. 생활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	○ 「 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 」 제4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		
	다. 과태료 부과·징수	○ 「 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 」 제4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		다. 과태료 부과·징수	○ 「 <u>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</u> 」 제5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		
	3. <u>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</u> 에 관한 다음의 사무		(생략)	3. 「 <u>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</u> 」에 관한 다음의 사무			(현행과 같음)
	가. 판매중지·개선·수거 또는 파기명령	○ 「 <u>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</u> 」 제34조		가. 판매중지·개선·수거 또는 파기명령	○ 「 <u>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</u> 」 제3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		
	나.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○ 「 <u>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</u> 」 제43조		나.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	○ 「 <u>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</u> 」 제43조		
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	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 기관
경제 정책과	1.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(다만, 서울시가 직접 산 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 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 정한 경우는 제외)	(생략)	(생략)	거점성 장추진 단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	가. 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	(현행과 같음)		
	나. 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	(현행과 같음)		
	<b>다.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 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</b>	○ 산업집적법 제36조	<b>다. 개발토지의 분양임대 업 무 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</b>		(현행과 같음)		
인사과	1~2. (생략)	(생략)	(생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
	3. (생략)	○ (생략) ○ 「지방공무원보수규 정」 제6조·제16조	(생략)	(현행과 같음)	○ (현행과 같음) ○ 「지방공무원보수규 정」 제6조	(현행과 같음)	
	4. (생략)	○ (생략) ○ (생략) ○ 「지방공무원보수규 정」 제6조·제16조	(생략)	(현행과 같음)	○ (현행과 같음) ○ (현행과 같음) ○ 「지방공무원보수규 정」 제6조	(현행과 같음)	
	5. (생략)	○ (생략) ○ 「지방공무원보수규 정」 제6조·제16조	(생략)	(현행과 같음)	○ (현행과 같음) ○ 「지방공무원보수규 정」 제6조	(현행과 같음)	

○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명칭 변경 등이 지연되는 경우 시민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.

○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임 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통일시키는 것은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시우	02-2180-8056

## [참고자료] 관련 법규

### 「지방자치법」

-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

**제2조(정의)**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위임"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위탁"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3. "민간위탁"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4. "위임기관"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, "수임기관"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
5. "위탁기관"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, "수탁기관"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**제4조(재위임)**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나 시장·군수 또는

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(교육장을 포함한다) 또는 읍·면·동장,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

##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,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보조기관·소속행정기관의 장·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임의 기준 등)**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,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시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재위임)**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.

**제4조(사전승인 등의 억제)**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.

**제5조(위임사무)**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·소속행정기관의 장·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② 별표에서 허가·인가·신고·등록·면허·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